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32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김장겸・김소희・주호영

우재준 · 김재섭 · 조정훈

진종오 • 박덕흠 • 서일준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 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13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13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재난구조, 사회복지"를 "재난구조"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3.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3항에 따른 분담금
-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전기통 신역무 매출액에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 용도
- 2.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	제29조(요금의 감면)
업자는 국가안전보장, <u>재난구</u>	재난구조
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	
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
<u><신 설></u>	제29조의2(디지털복지기금의 설
	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
	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
	하기 위하여 디지털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 1. 제3항에 따른 분담금
-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그 100 분의 3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 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분담금 부담능 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 <u>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u> <u>에 사용한다.</u>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 용도

-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 정·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